

#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0. 6.26.	규칙	제808호
개정	1992. 4.30.	규칙	제867호
	1995. 5. 3.	규칙	제962호
	1997. 5.31.	규칙	제1057호
	1999. 9.17.	규칙	제1133호
	2000. 9.28.	규칙	제1161호
	2001. 8.31.	규칙	제1196호
	2002.10.25.	규칙	제1365호
	2003. 6.11.	규칙	제1390호
	2004. 2.24.	규칙	제1428호
	2004. 6.30.	규칙	제1454호
	2004.10.28.	규칙	제1466호
	2005. 2.28.	규칙	제1484호
	2005. 5.25.	규칙	제1493호
	2005. 7.14.	규칙	제1495호
	2005. 9.26.	규칙	제1515호
	2006. 2.27.	규칙	제1538호
	2008. 2.19.	규칙	제1652호
	2008.12.18.	규칙	제1713호
	2009. 8. 7.	규칙	제1744호
	2009. 9.25.	규칙	제1755호
	2010. 3. 1.	규칙	제1765호
	2010.10.27.	규칙	제1803호
	2011. 1.17.	규칙	제1806호
	2011. 4. 7.	규칙	제1815호
	2011. 7.15.	규칙	제1831호
	2011.12.27.	규칙	제1849호
	2012. 2.13.	규칙	제1857호
	2012. 4.23.	규칙	제1866호
	2012. 9.17.	규칙	제1878호
	2012.10.31.	규칙	제1888호
	2013. 6. 26.	규칙	제1924호
	2014. 1.24.	규칙	제1927호
	2014. 1.24.	규칙	제1937호
	2014. 4. 9.	규칙	제1941호
	2014. 9.22.	규칙	제1970호
	2015. 5. 4.	규칙	제1991호
	2015.10. 5.	규칙	제2006호
	2015.11.30.	규칙	제2021호
	2016. 3.29.	규칙	제2034호
	2016. 6. 8.	규칙	제2038호
	2016. 7.20.	규칙	제2041호
	2017.10.13.	규칙	제2087호
	2018. 6.15.	규칙	제2112호
	2018.10.30.	규칙	제2128호
	2018.11.29.	규칙	제2129호
	2019. 6.21.	규칙	제21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학문연구의 진흥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연구센터는 별표와 같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총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서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는 연구비 총액(현금만을 말하며, 참여기업 부담금은 제외한다)이 40억 원 이상이고, 연구기간이 5년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기준 변경 및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45조에 따른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5조(신청) 연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협약서
2. 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제6조(소장) ① 연구센터에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단계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직) 연구센터에 부, 실 등 필요한 내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④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요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기간) ① 연구센터의 운영기간은 연구센터 등제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협약 내용 변경 및 그 밖에 사유로 연구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원연구센터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 학칙」 제45조에 따른 연구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국가지원연구센터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④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소장은 종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이관 합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각 연구센터는 운영계획의 수립, 연구방향의 설정,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 예산·결산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예산의 편성과 운용) ① 연구센터의 예산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편성 운용되어야 한다.

②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 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①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한다. 다만, 총장은 지원기관의 연구비지원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경우 해당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장이 소속된 대학(원)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외에는 본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연구센터에 지도·조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연구센터의 예산과 결산을 매 연도마다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칙) 각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808호, 199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7호, 1992.4.30.)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2호, 1995.5.3.)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7호, 1997.5.31.)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3호, 1999.9.17.)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1호, 2000.9.28.)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6호, 2001.8.31.)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5호, 2002.10.25.)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0호, 2003.6.11.)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학·공학연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이론물리학연구센터, 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연구센터, 대역해석학연구센터, 세포분화연구센터,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 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암연구센터, 분자촉매연구센터,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고차구조형유기산업재료연구센터, 복잡계통계연구센터, 기후환경시스템연구센터, 지능형생체계면공학연구센터,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연구센터,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생체계측신기술연구센터,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의 소장 및 책임연구원 등의 임기 및 임용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428호, 2004.2.24.)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54호, 2004.6.30.)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66호, 2004.10.28.)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4호, 2005.2.28.)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93호, 2005.5.25.)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95호, 2005.7.14.)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15호, 2005.9.26.)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38호, 2006.2.27.)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52호, 2008.2.19.)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13호, 2008.12.18.)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44호, 2009.8.7.)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5호, 2009.9.25.)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65호, 2010.3.1.)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3호, 2010.10.27.)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6호, 2011.1.17.)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15호, 2011.4.7.)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31호, 2011. 7. 15.)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49호, 2011. 12. 27.)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7호, 2012. 2. 13.)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66호, 2012. 4. 23.)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8호, 2012. 9. 17.)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8호, 2012. 10. 31.)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4호, 2013. 6. 26.)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7호, 2013. 11. 13.)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37호, 2014. 1. 24.)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41호, 2014. 4. 9.)
-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70호, 2014. 9. 22.)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91호, 2015. 5. 4.)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91호, 2015. 5. 4.)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06호, 2015. 10. 5.)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1호, 2015. 11. 30.)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34호, 2016. 3. 29.)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38호, 2016. 6. 8.)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41호, 2016. 7. 20.)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87호, 2017. 10. 13.)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08호, 2018. 3. 23.)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12호, 2018. 6. 15.)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28호, 2018. 10. 30.)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29호, 2018. 11. 29.)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63호, 2019. 6. 21.)  
이 통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89. 3.11. 규칙 제744호  
개정 1991. 4.26. 규칙 제830호  
1996.11.13. 규칙 제1020호  
2001.11.21. 규칙 제1210호  
2008. 2.19. 규칙 제1658호  
2011. 4. 7. 규칙 제1820호  
2012. 7.12. 규칙 제1869호  
2020. 4.28. 규칙 제22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2조(기능) 연구소는 기존의 교육연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3조(설치요건, 근거 및 절차)①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2020. 04. 28.]

②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연구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한다.[개정 2020. 04. 28.]

③ 연구소의 설치에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심사와 관련기관의 검토, 연구운영위원회 및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신설 2020. 04. 28.]

제4조(주관기관과의 협의) 연구소장은 시설·공간의 사용, 연구소 업무 중 대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5조[삭제 2020. 04. 28.]

제6조(규정제정 및 개정절차)① 연구소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8.]

② 규정 제·개정안이 별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연구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04. 28.]

③ 규정 제·개정안은 연구처의 검토, 규정심의위원회,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규정 제정안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7. 12., 2020. 04. 28.]

제7조(평가) 총장은 연구소의 기능, 시설, 연구비, 연구활동, 연구영역, 재원조달 및 자립능력 등 운영상태를 3년마다 평가한다.[개정 2011. 4. 7.]

제8조(통합 또는 폐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구소의 장은 폐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업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8.]

제9조 [삭제]

제10조(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연구소의 설치, 평가, 통·폐합에 적용할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744호, 1989.3.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호, 1991.4.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20호, 1996.11.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결과 적용일) 제7조 규정의 평가결과의 적용은 199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제1210호, 2001.1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소 명칭에 관한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본교에 설치된 연구소의 규정 중 연구소 명칭은 별표1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연구소의 평가 및 존폐에 관한 경과 조치) 서울대학교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연구소평가를 거쳐 학칙에 등재된 연구소 중 최저등급("C"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제1658호, 2008.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20호, 2011.4.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제1869호, 2012.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34호, 2020.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